



제43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소규모 택배 영업점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 김용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215호)

2026. 2.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오 세 일

목 차

□ 김용태의원 대표발의(2215215)	1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소규모 택배 영업점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안 제29조의2 신설)	2

□ 김용태의원 대표발의(2215215)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용태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12. 12.
3. 회 부 일 : 2025. 12. 1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택배 영업점은 택배서비스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구역을 할당받아 해당 구역 내에서 화물의 집화, 배송 등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음.

한편, 택배 영업점은 택배사(본사)의 택배 물량을 처리하는 역할로 택배서비스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나, 열악한 배송 여건 등에 의한 지역의 영세한 영업점의 경우에는 공간적·경제적 한계로 인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별도의 지원 시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택배 영업점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Ⅲ. 검토의견

1. 소규모 택배 영업점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안 제29조의2 신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택배 영업점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u>제29조의2(소규모 영업점에 대한 지원)</u>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규모 이하의 영업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영업점의 범위와 지원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검토의견

현행법에 따른 영업점¹⁾이란 택배서비스사업자 또는 소화물배송대행

1)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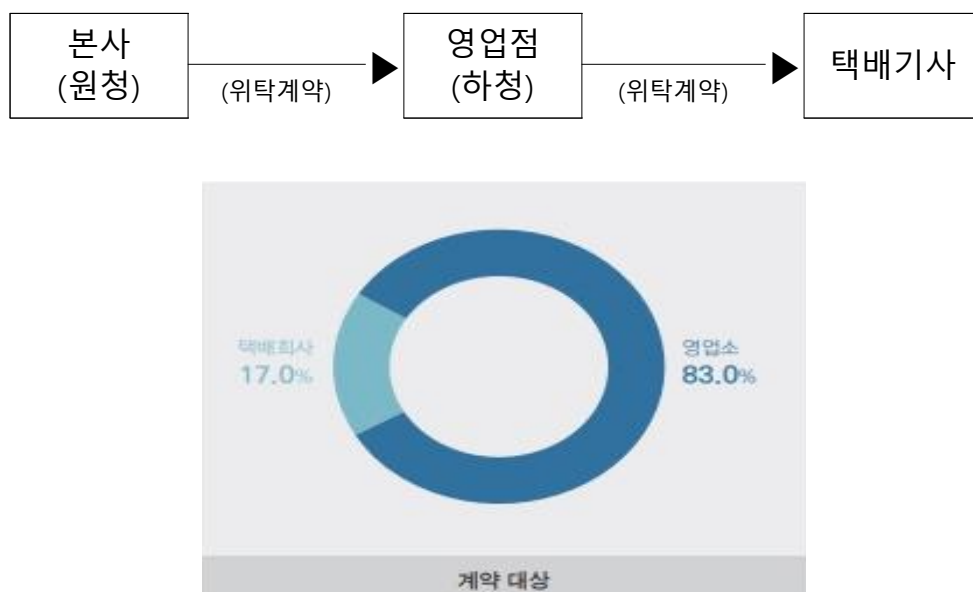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영업점”이란 택배서비스사업자 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구역을 할당받아 해당 구역 내에서 화물의 집화, 배송 등 생활물류서비스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서비스인증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구역을 할당받아 해당 구역 내에서 화물의 집화, 배송 등 생활물류서비스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말함.

택배서비스사업자는 택배서비스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영업점에게 위탁할 수 있는데,²⁾ 택배서비스사업의 거래구조 현황을 살펴보면 택배서비스사업자가 택배기사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17%)보다,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영업점에 위탁하고 영업점과 택배기사 간 운송위탁 계약을 맺는 경우(83%)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 택배서비스종사자 위수탁계약 현황 】



자료: 국토교통부, 2023 생활물류 실태조사

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8조(택배서비스사업자 등의 업무의 위탁 및 손해배상책임) ① 택배서비스사업자는 택배서비스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영업점 또는 택배서비스종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처럼 택배 영업점이 일정 구역 내에서 화물의 집화, 배송 등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며 택배 물량 처리의 핵심축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한정된 자본·인력·기술 등 소규모 자영업자 형태의 구조적 한계, 위탁단가에 따른 원청사(택배사업자)와의 갈등, 운영비용 증가로 인한 수익성 악화 등으로 영업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하의 택배 영업점에게 국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은 영업환경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영업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영업점의 경영 안정은 그에 소속된 택배서비스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보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법 제23조**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각 호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³⁾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 처우개선 및 보건을 위한 휴게시설 및 생활물류 쉼터 등 시설 설치·개선을 포함한 지원도 포함하고 있음.

3)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3조(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활물류서비스산업과 관련된 경제적·환경친화적 시설 및 장비의 확충과 개선
2.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 처우개선 및 보건을 위한 휴게시설 및 생활물류 쉼터 등 시설 설치·개선
3.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 기술 개발 및 그 실증을 위한 시범도시·단지의 조성
4. 생활물류서비스산업 효율화를 위한 컨설팅
5. 생활물류서비스산업 관련 교육
6. 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택배 영업점에 대한 지원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포함되어 제23조의 적용을 받으므로, 현행 규정에서 일정 범위의 지원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택배 영업점에 대한 지원을 위해 별도의 조문을 신설할 필요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필요할 경우 제23조 각 호에 지원 대상이나 내용을 보완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한편, 현행 제23조는 택배서비스산업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를 포함한 생활물류서비스 전반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규모 택배 영업점만을 지원대상으로 할 경우 택배서비스 사업자 또는 소규모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나. 관계부처 의견

1) 국토교통부 의견

현행법에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이미 규정하고 있는 바, 택배 영업점에 대해 별도로 지원 근거를 마련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 기획예산처 의견

택배서비스는 민간서비스 영역으로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운영 바람직하고 국가 개입 시 시장경제 효율성 훼손 우려가 있으며, 특히 민간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을 국민 세금으로 보전하게 될 경우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 유발 우려가 있음. 또한 일정 규모 이하라는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원 시 다른 산업분야 영세사업자들의 지원 요구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80